

산학협력단 계약직 임금채정 지침

제정 2014. 11. 27.

1차 개정 2015. 08. 24.

2차 개정 2016. 04. 15.

3차 개정 2019. 06. 24.

4차 개정 2019. 07. 24.

5차 개정 2020. 03. 20.

1. 본 지침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내 산학협력지원부 및 소속기관의 무기계약직 및 계약직원의 임금 책정에 적용한다. 단, 외부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 계약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계약직원의 임금은 경력, 숙련도 및 전문성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항목	구분	세 부 기 준	월지급액	비 고
기본액	공통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1,400,000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조정
일반경력	가	(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소 근무경력) 1년 미만	50,000	경력증명서 제출에 한함.
	나	(상동) 1년 이상~2년 미만	100,000	
	다	(상동) 2년 이상~3년 미만	200,000	
	라	(상동) 3년 이상	300,000	
전문경력	가	(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소 근무경력) 1년 미만	100,000	경력증명서 제출에 한함.
	나	(상동) 1년 이상~3년 미만	200,000	
	다	(상동) 3년 이상~5년 미만	300,000	
	라	(상동) 5년 이상	400,000	
학력인정	가	석사 학위 취득자 (일반)	200,000	졸업증명서 제출에 한함
	나	석사 학위 취득자 (인증,분석)	300,000	
	다	박사 학위 취득자	500,000	

항목	부서	세부기준	월지금액	비 고
임 용 부 서 자 격 증	자연 과학 연구 지원 센터	해당분야 기사 자격증 취득	500,000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400,000	
	창업 보육 센터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또는 중소 기업청 고시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정자격(제3장 1절 19조)	300,000	▶자격증 제출 ▶복수일 경우 최상위 금액 1개 자격만 적용
	친환경 농산물 인증원	친환경농산물인증심사원 자격취득자	500,000	
		해당분야 기사 자격증	400,000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300,000	
행정 부서	해당 업무 분야 자격증	200,000		
숙련도	가	근무경력 및 면접 결과에 따른 숙련도 상	300,000	
	나	근무경력 및 면접 결과에 따른 숙련도 중	200,000	
	다	근무경력 및 면접 결과에 따른 숙련도 하	100,000	
조정 금액	공통	1)임용예정 직종의 특수성과 담당업무 특성 고려 2)단, 산학협력단의 정책적 사업의 업무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조정 금액은 단장이 결정한다.		

3. 항목별 적용 예시

기본액 + 일반 및 전문경력 + 학력인정 + 임용부서 자격증 + 숙련도

4. 해석

가. 전문경력의 경우 임용부서 근무경력에 한하며, 일반경력은 전문경력을 제외한 경력을 의미 함. 일반경력과 전문경력을 구분하여 1년 미만 잔여 경력월수는 일반 경력으로 적용 함. 끝.

나. 학력인정

임용부서		관 련 학 과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		토양환경, 환경공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친환경농산물인증원		농업, 임업, 축산, 식품분야
일반	창업보육센터	일반 대학원
	산학협력팀	일반 대학원

다. 임용부서 자격증

임용부서	자 격 증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	토양환경, 환경공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창업보육센터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 - 중소기업청 고시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인정자격 (제3장 제1절 제19조)
친환경농산물인증원	- 인증심사원 - 농업, 임업, 축산 식품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행정부서	- 세무, 회계관련 자격증 - 정보·전산처리기사 및 기능사 - 사무처리 관련 자격증 (MOS 등) - 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라.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전까지 임용부서(전보)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임용부서의 자격증 수당을 지급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자격증을 이미 소지한 경우에는 임용(전보)되는 월부터 지급하며, 신규 취득시는 취득한 월부터 지급한다.

다만, 복수(겸직)일 경우 최상위 금액의 자격증 수당 1개만 지급하고, 타부서의 자격증은 소지(취득)하더라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인사발령(전보)에 따라 임용부서의 자격증이 없거나, 수당이 감소할 경우에는 기존 임용부서 자격증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5. 각종 제수당 지급 기준

수당명칭	지급시기	지 급 액	비고
명절휴가비	추석, 설	■ 기본급의 50%를 추석과 설에 각각 지급	변경
급 식 비	매월	■ 급식비 : 매월 100,000원	
장기근속수당	매월	■ 5년 이상 10년 미만 : 월 5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월 10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월 150,000원 ■ 20년 이상 25년 미만 : 월 200,000원 ■ 25년 이상 : 월 250,000원	
가계지원비	분기별 (3월,6월, 9월,12월)	■ 5년 미만 : 분기별 50,000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 분기별 10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분기별 150,000원 ■ 15년 이상 : 분기별 200,000원	신설
월정직책급	매월	■ 300,000원 : 직제규정에 따른 소속 기관장 ■ 300,000원 : 산학협력지원부 부장, 소속기관 부장 ■ 250,000원 : 산학협력지원부 과장, 소속기관 차장 ■ 200,000원 : 직제규정 제12조 부원장, 산학협력지원부 팀장, 소속기관 과장 ■ 120,000원 : 산학협력지원부 주임, 소속기관 대리	
안전관리수당	매월	■ 50,000원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 계약직원 중 3년 이상 근무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신설

부 칙

이 변경 지침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지침은 2015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지침은 2016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지침은 2019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지침은 2019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침 5. 각종 제수당 지급기준은 2019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지침은 2020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4-라. 자격증 수당 및 5. 각종 제수당 지급기준은 2020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